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22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 강훈식 · 이개호 · 김용만

민형배 • 민병덕 • 김남근

이강일 • 남인순 • 문진석

윤준병 · 강준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·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, 정직,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.

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 건, 369억3,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.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함.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」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, 내부통제를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없었음.

반면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이나 「상호저축은행

법」은 횡령·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"별표"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.

이에 따라 카드사·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·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수 있도록 「상호저축은행법」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·배임에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(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신전문금융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3(수뢰 등의 금지)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횡령, 배임, 증여, 그 밖에 뇌 물의 수수,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제1항은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. 별표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7의2.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횡령, 배임, 증여, 수뢰요구, 취득 또는 약속을 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0조의3(수뢰 등의 금지) ① 여
	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
	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
	을 불문하고 횡령, 배임, 증여,
	그 밖에 뇌물의 수수, 요구 또
	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	② 제1항은 제6장 여신전문금
	<u>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</u>
	준용한다.